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436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6. 10. 31.
4. 회부일자 : 2016. 11. 03.

Ⅱ. 제안이유

○ 직속기관 명칭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설치 · 운영기관임이 나타나지 않아 이용자가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혼란이 있어 명칭을 변경하여 교육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기존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직속기관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교육수요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기관임을 알 수 있도록 직속기관 명칭 개정(안 제3장제1절부터 제7절까지 및 제10절의 제목, 제10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 제41조,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 기존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직속기관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변경(안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0조의2제2항, 제21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9조제2항,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의안 별첨

3. 기　　타 :

○ 입법예고(2016.10.12.~ 10.23.) : 의안 [별첨3]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Ⅴ.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36호로 제출되어 2016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직속기관 명칭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기존 토지지번으로 되어 있는 직속기관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직속기관 표시에 대한 검토

❍ 현행「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교육청 직속기관의 명칭을 살펴보면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의 기관명칭 앞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아닌 '서울특별시'로 명기하여 시민들이 동 기관들을 서울특별시 직속기관으로 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 실제로 '마포평생학습관', '노원평생학습관' 등은 교육청이 설치·운영하는 평생학습관임에도 불구하고 '강동구 평생학습관', '관악구 평생학습관'과 같이 자치구가 설치·운영하는 평생학습관으로 오인하여 마포구, 노원구 등 해당 자치구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1)]

❍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교육청 직속기관들의 명칭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명기함으로써 동 직속기관들이 교육청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하고자 동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는바,

---

1) [붙임1] 도서관·평생학습관 민원 현황 참고. 또한 동 개정조례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서울특별시 누리집의 민원사례를 보면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의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도서대출카드가 통합되어 있지 않음에 따른 불편사항을 서울시에 요청한 사례가 있다는 점(2016.4.18)에서 서울시 또는 자치구와 교육청의 도서관 설치·운영이 이원적이라는 것이 이용자에게 혼선을 주는 사례도 있음.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교육청이 직속기관 명칭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명기하는 것은 민원인들의 기관이용 시 혼선을 방지하고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도로명주소 변경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지번주소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있는 바, “도로명주소”란 부여된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 상세주소에 의하여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동, 층, 호)로 표기하는 주소제도입니다.[2)]

○ 행정자치부는 도로명주소로의 변경과 관련하여 2011년 7월 29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지번 주소와의 병기를 허용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 토지대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 도로명주소만을 쓰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모든 소재지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안의 도로명주소 변경은 상위법령에 따른 후속적 조치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도로명주소 시행이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다소 때늦은 감이 있다고 할 것인 바, 향후 교육청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이 조례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 명칭 변경에 대한 검토

○ 금번 개정조례안은 제10절(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에서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시설관리사업소’라 함)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이하 ‘시설관리본부’라 함)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는 학교시설의 보수 및 직속기관 환경개선, 사립학교 시설공사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의 직속기관으로 2005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4332호)에 따라 설립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학교보건진흥원 4층에 임시사업소로 설치·운영되어 오다가 2008년 4월 25일 구)수도여자고등학교로 청사가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3)]

---

2)「도로명주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3)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중 시설관리와 관련한 직속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곳은 4곳임([붙임] 참고).

○ 시설관리사업소를 시설관리본부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는 혼돈을 주는 기관장 명칭으로 인해 일반공사업체 '현장소장'과 혼란이 발생하고, 시설관리사업소는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기관장 직급이 3급이라는 점을 들어 '소장'보다는 '본부장'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고(2016.10.4., 교육시설안전과-6717),

시설관리사업소도 교육현장의 시설관리 지원업무 확대에 따른 기구확장에 대비하기 위해 '본부'라는 명칭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습니다(2016.10.4., 운영지원과-2510).

○ 다만 서울특별시의 행정기구와 비교하여 금번 개정조례안의 직속기관 명칭변경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4장 사업소'에서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등 3개의 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4] 오히려 사업소가 본부보다 상위의 기관구분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현재 교육청이 제출한「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볼 때 시설관리사업소의 조직 규모 및 직급의 변동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직 확대에 따른 조치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바, 시설관리사업소 명칭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안건 심의과정에서 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4) 서울특별시는 이외에도 본청에 8개의 본부를 두고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의 주요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조직관리·예산·법제·재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조정실을 둔다.
②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를 둔다.
제4장 사업소
제1절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제50조~제52조 (생략)
제2절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제53조~제56조 (생략)
제3절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제57조~제60조 (생략)

[붙임1]

도서관·평생학습관 민원 현황

○ 기　　간 : 2016. 1. 1 – 10. 31
○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 내　　용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도서관·평생학습관과 관련하여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 제기한 민원 된 민원

순번	날짜	민원접수처	민원내용	비고
1	2016. 4. 22	마포구청	마포평생학습관 열람실 부족	민원이첩 사항
2	2016. 10. 31	마포구청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증축 및 현대화 요구	민원이첩 사항
3	2016. 4. 19	서울시	대출직원 친절 감사 (고척도서관)	“시장에게 바란다” 등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
4	2016. 4. 27	서울시	타 시·도 시민에게도 대출요망 (동대문도서관)	“
5	2016. 5. 14	서울시	휴관일 축소 요망 (양천도서관)	“
6	2016. 5. 31	서울시	타 시·도 시민에게도 대출요망 (동작도서관)	“
7	2016. 6. 10	서울시	도서관 무선인터넷 증설 요청 (동대문도서관)	“

[붙임2]

시·도교육청별 시설관리 전담 직속기관의 설치 현황 (행정기구 설치 조례 기준)

교육청	시설관리 전담 직속기관 설치 여부	명칭
서울	○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
부산	X	-
인천	X	-
대구	X	-
광주	○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
대전	X	-
울산	X	-
세종	X	-
경기도	X	-
강원도	X	-
충청북도	X	-
충청남도	X	-
전라북도	X	-
전라남도	○	전라남도교육시설감리단
경상북도	X	-
경상남도	○	경상남도교육시설감리단
제주도	X	-

관 계 법 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13.] [법률 제14372호, 2016.12.13., 일부개정]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13.] [대통령령 제27668호, 2016.12.13., 일부개정]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